

분쟁조정 규정

사단
법인 대한축구협회

분쟁조정 규정

2010. 1. 14. 제정

2010. 7. 2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 (이하 "규정")은 대한축구협회 (이하 "협회") 및 회원단체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조정 절차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역할)

협회는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설치한다.

제3조 (주소)

분쟁조정위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131 협회 내에 두고 회의 혹은 심의는 원칙적으로 협회에서 열린다.

제4조 (분쟁조정위의 관할 대상)

① 분쟁조정위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단, 신청일로부터 사건의 최종 발생일이 2년이 경과한 사건은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협회에 등록된 선수, 팀, 에이전트 간의 분쟁
2. 국내 팀간에 지급되어야 하는 훈련보상금에 관한 분쟁
3. 기타 협회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위가 처리할 것을 의결한 사항

② 본 조의 ①항 1호의 분쟁과 관련하여 분쟁의 양 당사자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프로연맹")의 회원 및 소속일 때, 프로연맹 조정위원회 세칙에 따라 일차적으로 프로연맹의 조정위원회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프로연맹 조정위원회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협회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의 관할 사항이 아닐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당사자들이 적절한 조정, 중재 기관을 찾도록 통보한다.

제5조 (적용 규정 및 법률)

분쟁조정위는 관련 심리 및 결정을 할 때 협회와 FIFA의 정관과 규정을 적용하고 관계법령과 당사자간의 계약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제2장 분쟁조정위 구성

제6조 (분쟁조정위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나 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자로 구성된 3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을 둘 수 있고,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시 프로연맹 등 회원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1/2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7조 (비밀 유지)

분쟁조정위의 위원 및 간사, 부간사, 심리 진행상 심리에 참여하게 되는 자는 별지 1의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업무상 알게 된 모든 사실 및 기록에 대해서 언론 및 기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제8조 (위원 기피 및 제척 사유)

① 분쟁조정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분쟁의 일방 당사자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 또는 개인적이거나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서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2. 해당 위원과 관련 있는 팀이 연관되어 있거나 분쟁의 일방 당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3. 기타 결정의 공정성에 현저한 저해가 있는 경우(매수, 금품수수 등)

② 분쟁조정위 위원은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분쟁조정위에 통보 하고 위원회 참석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 사유가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련 분쟁조정위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신청자격 심의 요청 문서 요청에는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 위원의 기피신청 요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

에서 분쟁조정위가 결정한다.

⑤ 기피신청 요청 수용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을 동안, 해당 위원이 참석하여 결정한 해당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 결정은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제9조 (대리인 선임)

분쟁당사자는 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분쟁조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단, 대리인은 변호사 및 법정 대리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허가에 따라 변호사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0조 (문서의 제출 및 기한)

①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통지는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시 기재한 주소지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팩스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분쟁 관련 각종 기한은 분쟁조정위가 정하되, 그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협회의 휴무일과 겹칠 때는 다음 업무일을 마감일로 한다.

③ 분쟁의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맞추어 분쟁 신청 문서를 제출한다.

1. 분쟁 당사자(본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2. 법적 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 성명과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및 법적으로 분쟁 당사자를 대리한다는 위임장
3. 분쟁 관련 통지를 받을 수령인 및 수령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
4. 분쟁에 대한 설명 및 본건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
5. 분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
6. 분쟁과 관련된 문서 및 기타 증거 자료(예 : 계약서, 서신 등)
7. 금전적 분쟁일 경우 정확한 금액(계약금, 이적료 등)과 그 영수증 혹은 입금증
8. 신청서 작성 일자와 분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법적 대리인이 있을 경우 법적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함)
9.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분쟁조정 수수료 금 500,000원 입금증

④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 분쟁조정위 또는 협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분쟁당사자는 해당 기한까지 보완 내지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 ④항에 정한 시한까지 보완되지 않거나 해당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장 심리

제11조 (심리 절차 지휘)

- ① 제출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체 결정에 의거 주심(위원)(이하 ‘주심’이라 함)을 배정하고 위원장과 주심은 다른 위원과 사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한 후에 해당 사건의 결정문을 작성한다.
- ② 심리 및 심리 절차는 위원장이 지휘하도록 한다.
- ③ 주심은 자신이 맡은 모든 분쟁을 심리하는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심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 ④ 분쟁조정위는 당사자를 공정히 대하고 당사자의 주장, 입증 및 이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본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심리 절차 진행에 필요한 증인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관련자에게 심리개시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심리 일시 및 장소)

- ① 심리 일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심리 장소는 원칙적으로 협회내 비공개 장소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협회가 지정하는 격리된 비공개 장소에서 실시한다.
- ② 심리 일시와 장소(변경되는 경우 포함)는 심리 개시 5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분쟁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심리 일시 및 장소에 분쟁당사자의 출석권 및 그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13조 (증거)

- ① 분쟁당사자는 그 청구 또는 방어에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② 분쟁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 또는 감정인의 임의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주심과 협의하여 증인신청이나 감정인 신청의 허부를 판단하며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분쟁조정위는 심리결과 사안이 결정을 하기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판단될(성숙한) 때 또는 절차 속행이 불가능하여 중단해야 한다고 인정할 때는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조정 결정

제14조 (심리 종결과 조정 결정)

- ① 분쟁조정위는 심리를 종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조정결정을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정결정일 시한 이전에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결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조정 결정문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따라 주심이 작성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주심 및 위원이 서명한 후, 협회의 공문에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1. 당사자 쌍방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위 위원 이름
 4. 주문
 5. 결정의 이유 (생략 가능함)
 6. 결정 연월일
- ④ 조정 결정문의 통보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팩스나 다른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⑤ 심리 및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건을 협회 상벌위원회에 통보하고 당사자를 상벌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회부할 수 있다.
- ⑥ 심리 및 조정 결정 결과에 근거하여 분쟁으로 인한 간접 손해 비용과 분쟁 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화해)

분쟁조정위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가 화해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화해하였음을 협회 공문으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제16조 (조정 결정의 효력)

- ① 조정 결정은 협회의 관할 범위 내에서는 최종적이며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된다. 단, 도핑에 관한 사안은 국제규정에 따라 상소를 인정해야 할 경우 예외로 한다.
- ② 위원회의는 조정 결정사항을 협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이의신청)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한국 스포츠중재위원회 혹은 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s)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 신청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1일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a 2.분쟁당사자(신청인과 상대방)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일반 법원에 다시 제소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는 해당자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8조 (규정의 해석)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분쟁도 당사자가 이 규정에 의해 중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단, 이 규정 발효 이전에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금액을 10조 3항 9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 칙(2010. 7. 22. 개정)

1. 본 개정된 규정은 201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